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32
----------	------

제출년월일 : 2007. 3. .
제출자 : 안산시장

제정이유

- 투명한 사회 실현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과의 유기적인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2006. 11. 10일 안산시, 시의회, 유관·공공기관 및 경제계와 시민사회 단체, 언론이 참여하는 「안산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협약의 실천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안산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가 구성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
-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범위를 정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 협의를 거쳐 협약당사자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
- 다.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협약실천 계획을 수립함(안제4조 및 제5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2007년 본예산에 반영(49,637천원)

- 일반운영비 : 37,107천원
- 자산취득비 : 10,370천원
- 업무추진비 : 2,160천원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별첨)

- 입법예고 : 2007. 2. 2 ~ 2. 22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지역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언론부문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구성원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으로 각 부문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하여 안산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당사자) ① “안산투명사회협약” (이하 “안산협약”이라 한다)이라 함은 2006년 11월 10일 안산사회의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지역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언론부문의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을 말하며 이 조례에 의한 안산협약 체결당사자(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시가 출연·출자한 공단, 법인 등 유관단체를 말한다.
2. “지방의회부문”이라 함은 안산시의회를 말한다.
3. “지역경제부문”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관련 지역경제단체를 말한다.
4. “시민사회부문”이라 함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비공공기관을 말한다.
5. “언론부문”이라 함은 시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언론기관을 말한다.

② 기타 부문에서 협약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협약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지원 등) ① 시는 안산협약의 실천을 위한 안산투명사회협약 실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협약의 이행 및 확산을 위한 협의회 운영지원
2. 안산협약의 평가,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요구하는 사항
3. 해당부문의 창구역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협약당사자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시는 안산협약에 참여한 공공부문 참여기관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협약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매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해당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내용) 실천계획에는 안산협약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2. 행동강령, 윤리강령 등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알권리 및 행정정보 접근권 확대에 관한 사항
4.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및 자정 노력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반부패 의식제고를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약당사자간 협약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감사담당관실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감사담당관 김 진 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조사담당 문 양 교
	담당자 성명·전화	김 대 왕 (행정 2683)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 사항 검토보고

- 입법예고 기간 : 2007. 2. 2 ~ 2. 22
- 입법예고 방법 : 지역언론, 시홈페이지, 게시판(시청, 구청, 동사무소)
- 자치법규명 :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제출 내용
 - 제출자 : 안산 YMCA 류홍번 사무총장
 - 제출방법 : 인터넷 메일
 - 의견제출 내용
 - 조례제목 :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목에서 “그” 삭제)
 - 제3조2항 : 「~ 안산협약의 이행 ~ 시는 ~ (중략) ~ 재정 등을 지원한다」로 반영
 -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 추진하며 매년(또는 격년) 이를 공고한다」로 반영
 - 제5조(실천계획의 내용)② 「부패방지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업」을 반영

○ 의견 검토결과

구분	조례안	의견	반영여부	사유
제목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목에서 “그” 삭제)	미반영	원안대로 반영
3조	제3조2항 ~ 안산협약의 이행 ~ 필요할 경우 시는 ~(중략) ~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	제3조2항 ~ 안산협약의 이행 ~ 시는 ~ (중략) ~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반영	
4조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① ~ 추진하며 매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반영	
5조	제5조(실천계획 내용)	② 「부패방지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업」을 반영	미반영	* 공공부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타 민간부문과 협조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규정으로 반영예정

- 향후계획 : 검토내용을 조례안에 반영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32
----------	------

제안년월일 : 2007. 4. 5.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내용중 “언론부문”의 협약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협약당사자중 “언론부문” 을 시에서 활동하는 언론기관으로 확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안산협약의 평가,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그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조중 “시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언론기관” 을 “시에서 활동하는
언론기관” 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중 “요구” 를 “요청” 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협약당사자) ①(생략)</p> <p>1. ~ 4. (생략)</p> <p>5. <u>시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언론기관을</u> <u>말한다.</u></p>	<p>제2조(협약당사자) ①(생략)</p> <p>1. ~ 4. (생략)</p> <p>5. <u>시에서</u></p>
<p>제3조(협의회 지원등) ①(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안산협약의 평가,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u>요구하는 사항</u></p> <p>3.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협의회 지원등) ①(원안과 같음)</p> <p>②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 <u>요청</u></p> <p>3.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